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17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김종양 · 김선교
우재준 · 강대식 · 강승규
김승수 · 신성범 · 송언석
김은혜 · 유상범 · 김예지
주호영 · 이철규 · 조지연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, 장애인 편의제고 조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,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, 방송 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,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,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·토론회, 정당의 정강·정책의 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(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등),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261조제4항제1호 신설).
- 나.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,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도록 함(안 제147조제11항 신설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6항 중 “방영할 수 있다”를 “방영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72조제2항 중 “방영할 수 있다”를 “방영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47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⑪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여야 한다.

제26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70조제6항(제71조제3항 및 제137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72조제2항(제73조제4항·제74조제2항 및 제8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아니한 자
2. 제147조제3항(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

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 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70條(放送廣告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에 있어서 聽覺 障礙選舉人을 위한 韓國수화언어(이하 “韓國수어”라 한다) 또는 자막을 <u>방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⑦ · ⑧ (생략)</p> <p>第72條(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) ① (생략)</p> <p>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演說의 放送에 있어서는 聽覺 障礙選舉人을 위하여 韓國수어 또는 자막을 <u>방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 <p>第147條(投票所의 設置) ① ~ ⑩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第70條(放送廣告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방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⑦ ·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第72條(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u>방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第147條(投票所의 設置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⑪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</u></p>

⑪ (생략)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① ~ ③ (생략)
④ 제147조제3항(제148조제4항
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
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
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
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
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⑤ ~ ⑫ (생략)

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
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
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
여야 한다.

⑫ (현행 제11항과 같음)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70조제6항(제71조제3항 및
제137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
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
72조제2항(제73조제4항·제74
조제2항 및 제82조제4항에서
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
위반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
을 방영하지 아니한 자

2. 제147조제3항(제148조제4항
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
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
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
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

⑤ ~ ⑫ (현행과 같음)